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년월일 : 1999. 4. 15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최저세율 적용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제5종 면허세를 부과함 (안 제13조의2)
- 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표에 따라 0.3%~7% 초과누진 적용하던 것을 영업용건물등 기타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과 같이 0.3%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안 제27조의3)

### 3. 관계법령

- 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나. 부산광역시 시달공문 [세정13400-29('99. 1. 7), 세정13400-20029('99. 1.14)]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2신설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7조의3신설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3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p>
<p>&lt;신 설&gt;</p>	<p>제27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p>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년월일 : 1999. 4. 15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 1. 제안이유

배기량 8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제5종 면허세를 부과하던 것을 배기량 800cc미만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하여도 제5종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최저세율 적용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현행 배기량 8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제5종 면허세를 부과하던 것을 배기량 800cc미만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의2)

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업용건물등 기타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과 같은 0.3%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안 제27조의3)

### 3. 관계법령

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나. 부산광역시 시달공문 [세정13400-29('99. 1. 7), 세정13400-20029('99. 1.14)]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3조의2신설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신 설>	제27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